

# 개발제한구역 단속 공무원 교육자료

## ■ 단속의 대상

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, 죽목의 벌채 행위를 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단속의 대상으로 함

-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-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
## ■ 현장조치

-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현황 등을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현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불법행위가 차량 및 건설기계 등 이용이 용이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, 현장약도 및 상황도를 작성,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한다.
-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자를 조사·확보하고 증인 및 현장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적발한 불법행위가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사의 중단, 물건의 이전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